

[별표 2] <개정 2000.10.5>

전염병환자 등의 청소·소독의 대상(제19조제1항관련)

1.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·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분뇨, 토사물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·천·종이 등
  - 나. 시체
  - 다.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  - 라.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  - 마.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, 전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, 기구, 서적 등
  - 바. 병실의 깔기 등
  - 사. 우물, 주방, 주방기구, 물통 등
  - 아. 변소, 수세변기구, 쓰레기통,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
  - 자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  - 차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물 또는 배수
  - 카.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
2. 성홍열, 디프테리아,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·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콧물, 가래침, 고름,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, 천, 종이 등
  - 나. 시체
  - 다.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  - 라.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  - 마.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, 전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, 기구, 서적 등
  - 바. 병실의 깔기, 기구, 벽 등
  - 사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  - 아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물 또는 배수
  - 자.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
3. 발진티푸스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·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콧물,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, 천, 종이 등
  - 나. 시체
  - 다.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  - 라.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  - 마. 병실의 깔기 등
  - 바.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
  - 사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  - 아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물 또는 배수
  - 자.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
4. 페스트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·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혈액, 콧물, 가래침,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, 천, 종이 등
  - 나. 시체
  - 다.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, 침구, 운반기구 등
  - 라.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, 침구 등
  - 마.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, 기구, 서적 등
  - 바. 병실의 깔기, 기구, 벽 등
  - 사. 서적이 서식하거나 통행하는 장소
  - 아.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 또는 장소
  - 자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  - 차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물 또는 배수
  - 카.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
5. 일본뇌염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, 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하수구, 고인 물, 잡초 등
  - 나. 기타 모기의 발생 및 서식이 용이한 장소
  - 다.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
  - 라.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물 또는 배수
  - 마.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